



문서번호 : 17-6-사무-3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민변][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7. 6. 6. (화)
전송매수 : 총 13 매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북공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민변 60대 행정 과제 제안서를 자문위 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개요

[1] 검찰-국정원 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청와대에 파견된 정치검사에 의한 검찰의 정치화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출신이었음. 또한 각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여 검찰의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은 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음.
- 한 편 정부기관 곳곳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이러한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

로 인한 봐주기 수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2) 파견검사들에 의한 법무행정의 검찰화

- 현행 직제 규정상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절반에 해당하는 33개이고,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은 11개임. 결국 법무부 상당수의 직책은 검사들이 맡고 있음.
- 1~2년 후에 수사현장으로 돌아가는 검사들이 관련 입법과 법제도 시행 관리를 맡다 보니 전문적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법무부 검찰국과 중앙지검 간부들의 돈봉투 사건에서 보이듯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찰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무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의 입장에 치우치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3) 검찰 공안부의 비대화

- 공안부가 선거, 노동, 집회 등의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수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 시민단체, 학생, 야당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검찰의 권력에 봉사하는 정치세력으로 비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4)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 정치적인 사건의 재판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해 왔음
- 국회의원 및 각부 요인들을 불법사찰함으로 인해 이들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킴
- 댓글조작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일삼음.

▷ 정책 대안

1)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 근본적으로는 검찰청법 개정, 한시적으로는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민정수석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 인사 기용이 필요함

2) 법무부의 탈검찰화(문민화) 및 전문 법무관료의 육성

-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민생사안에 전문 행정관료를 육성해야 함.

3)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 국내정보활동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정치에 대한 정보수집을 근절해야 함.
- 장기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축소가 필요함.

[2] 공정거래 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

- 통신, 전자, 유류, 자동차, 유통 등 생활필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3~4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됨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만연함.
- 신산업 분야에서는 재벌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재벌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재벌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략, 불공정 관계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빈곤층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 재벌대기업이 유통, 식품, 음식점 등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인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음.

2) 늘어지고 무기력한 공정위 조사행정

- 공정위는 스스로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라 정책기획부서라고 하며 불공정 피해신고를 받은 사건을 바로 조사하지 않고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재벌대기업이 대부분 조정에 응하지 않아 다시 공정위에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그 뒤에도 조사 시기를 놓쳐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음
- 담합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조사권이 없음.

3) 실종된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

- 남양유업 사건에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불공정행위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임.
- 2013년 7월 고발 요청권을 검찰에서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2016년 까지 고발요청권을 행

사한 사례는 거의 없음.

4) 취약한 중소기업단체,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 경제민주화는 법제도 개정이나 행정력 보다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인 단체 사이의 집단적 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납품단가결정,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가맹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단체들의 신고 내지 등록 제도를 가맹점법 시행령에 만들지 않아 대기업 본사들이 신고 되지 않은 가맹점주단체들이라는 이유로 상생 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책대안

1) 중소기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의 공정한 납품단가 교섭 등을 위한 집단교섭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를 육성하는 정책은 재벌주도 경제에서 독일, 일본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가는 필수적이 경로임.
- 산업합리화, 연구 ·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단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당공동행위(담합)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2) 검찰과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불공정조사 전담부서 신설

-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검찰청 구역에 공정거래 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3)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 · 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조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조사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공정위의 전문행정이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여 협력 행정

4)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30%(상장 20%)로 높게 정하고 있어 재벌총수 일가는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이하로 내려 일감 몰가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10%)미만으로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구제에 대해서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 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3] 노동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과 문제점

- 1) 있는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 노조설립도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나 노조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 2) 노동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지침(이른바 '4대 지침')
- 2015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의 내용으로 2016. 1. 22. 발표된 '공정인사지침'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음.
- 노동자와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3)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면서 시행령으로 적용 제외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주간 12시간 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해석은 장시간, 연장노동을 조장해 왔음.

4)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빈약한 근로감독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하나, 위법 적발사례는 매우 저조함.
- 노동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음.

5) ‘위험의 외주화’로 위협받는 산업안전

- 중대재해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임.
- 안전관리나 위험작업이 대부분 외주화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적격성과 안정보증 능력은 도급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6) 소득재분배와 기초생활 보장의 제 기능을 못 하는 최저임금

- 2017년 최저임금은 기초생활 보장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음.

▷ 정책대안

1)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불법파견 절발, 비정규직 권리 찾기를 위한 적극적 노동행정

- 노조설립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상 각종 장애를 제거해야 함
-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준을 설정하고, 혐의가 제기되거나 소지가 있는 업종·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의 불법파견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함

2) 노동개약 4대 행정지침의 폐기

- ‘노동개약 4대 지침’인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인 및 관련 지침,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의 조속한 폐기가 요구됨
- 노사자치 원칙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3) 장시간 노동을 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해석 폐기

-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적용 제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는 적용 제외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될 필요가 있음.

4) 근로감독 제도 및 물적·인적 기반 정비

- 사전적 ·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 있음.
- '노동근로 감독직' 신설 필요성 있음.
- 근로감독관을 증원 할 필요 있음.

5) '노조아님 통보'시행령 폐기 및 '법외노조'합법화

-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폐기해야 함.
- 설립신고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함.

6)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행정법규 정비

- 근본적 개선방안으로는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제3조 개정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범위의 별표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함
- 산재은폐 근절이 필요함

7)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 내년(2018)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한 월급 209만원 ·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함.

8) 기타 노동행정의 개혁 과제

-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함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우선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해야 함

[4] 환경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박근혜 정부에서의 중앙집중식 전원개발에 따른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과다 신규건설 및 노후핵/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핵 위험과 대기오염 악화

- 석탄/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이 계속되고 있어 핵단지화에 따른 위험증대와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2)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미흡 및 미세먼지

정보의 부실

-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은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측정에 부적합함.

▷ 정책대안

1) 노후 석탄발전소 및 핵발전소의 폐쇄와 수명연장 취소 및 신규 석탄발전소 및 핵발전소건설계획 백지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수요 현실화

- 과다예측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수요를 현실화하여 공급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2)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 종합적인 미세먼지 측정망의 구축과 측정자료의 실시간 공개, 측정기 관리감독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미세먼지 오염 주의보 기준 강화

- 미세먼지오염 발령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4)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배출원 총량규제, 미세먼지 총량규제도입 필요성 있음.

[5] 주거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위축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실질적으로 거의 실현되지 못했음.

2) 방치된 전월세난

- 도시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을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음.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외면되어 왔음.

3) 임대소득세 과세유예와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중단

- 박근혜 정부는 2012년부터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임대소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여 현재 2018년까지 임대소득세 부과가 유예되어 있음.

- 임대소득세를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5~10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고 임대료 인상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법상 도입되어 있으나, 임대소득세 감면정책으로 유명무실하게 됨.

▷ 정책대안

1) 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 법 개정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추진하
되, 법 개정 전 먼저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
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 있음

2)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고, 저소득
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3)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재개

-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자주택 공급 재개, 사회주택 방식의 근로자 복지
주택 사업 추진이 필요함.

4) 깡통전세 방지 대책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범위 확대, 보증금 보증보험 확대 필요.

[6] 금융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의 현황

- 현재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임.

2) 가계부채 확대의 경제적 문제점

- 소비위축, 인적자본 시장,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중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음.

▷ 정책대안

1) 이자 폭리 상한선 20%로 인하

- 고이율 대출 증가 억제, 이자제한법 시행력 개정이 필요함.

2) 대부업체의 폭리상한선을 이자제한법상 폭리상한선으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3) 서민금융진흥원의 10%이내에 서민대상정책자금 조달

-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4)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

- 채무조정,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함

5) 가계 연체채권 소각

- 가계 연체채권의 소각이 필요함

6) LTV, DTI 강화

- LTV, DTI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 할 필요성 있음.
- 7)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회생기간 원칙 3년으로 단축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선이 필요함.
- 8)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
- 2014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 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사실상 변호사로 한정)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사실상 대부업체로 한정)가 지나치게 협소한바 이를 개선해야 함

[7] 문화예술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1) 창작활동에 대한 열정페이 강요
 -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2) 창작물 가로채기
 - 저작 인격권 침해, 이름같이, 저작재산권의 부당한 양도강요 등의 형태로 창작물 가로채기가 만연함.
- 3) 수직계열화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현상
 - 우수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음.

▷ 정책대안

- 1) 만연한 문화예술 창작물 거래 불공정 시정
 -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 감독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하고 수시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 3)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탈취를 금지시키며, 표준제작비를 산정 및 공개 할 필요가 있음.

[8] 교육분야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1) 교육부 교육정책사업의 불투명성
 - 지방교육재정,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불투명하고, 정보공개관련 법령이

미비함.

2) 자율형사립고로 인한 교육불평등 및 고교서열화

- 자율형 사립고의 존재의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자율형 사립고로 인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 고교서열화, 일반고 위기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

▷ 정책 대안

1)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감사 실질화 및 정보공개

-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 자사고의 일반고전환신청을 먼저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9] 중소기업인 보호지원 행정 개혁과제

▷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음.

2) 미흡한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 할 수 없음.

▷ 정책 대안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

-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를 신속하게 운영하여 3개월 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이양, 진출억제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행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대기업 기술편취로부터 중소기업보호

-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행정을 통해 기술탈취, 편취행위를 조사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2017년 6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